

붙임 1.

2023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

1. 대상자: 2023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
(졸업 연기 및 유예신청(예정)자 또는 졸업불가자는 신청하지 않음)

2.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절차

신청 구분	제출 서류	
	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	② 마약류중독여부판별 검사 결과서 (진단서, 결과통보서 등)
방법	종합정보시스템 → 교직 → 교직사정 → 무시험검정신청 → [2023년 후기] 확인하여 맞으면 [신청] 클릭 → 신청서 출력하여 본인 서명 후 제출	마약류 검사 가능 병원에서 검사 신청 → 검사 실시 → 검사결과지 수령 →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제출 (검사 용도: 교사자격증 취득용)
기간	2024.4.22.(월) ~ 6.5.(수)	
장소	소속 학부사무실에 ①과 ②를 같이 제출	

3. 유의 사항

- 가. **[2023년 후기]**로 표기되지 않은 학생은 학부사무실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나. 복수전공자는 **[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]**를 **자격종별로** 각각, **총 2부를** 제출해야함.
다. 성범죄경력조회 및 마약류중독여부판별검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**[교직과정 홈페이지 → 교원자격무시험검정기준 → 교사자격취득결격사유관련 법률 시행]** 참고(또는 공지사항 참고)

4. 자격종별 및 대상 학부(전공)

순번	자격종별 및 표시과목	신청대상 학부(과) 전공	발급수수료
1	중등학교 정교사(2급)종교	· 기독교학부 기독교교육학전공, 신학, 미디어선교학	없음
2	중등학교 정교사(2급)중국어	· 어문학부 중국어학전공	
3	중등학교 정교사(2급)디자인	· 디자인영상학부 시각디자인전공, 산업디자인전공, 영상애니메이션전공, 인테리어디자인전공	
4	전문상담교사(2급)	· 기독교학부 상담학전공 · 사회복지학부 청소년학전공	
5	유치원 정교사(2급)	·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학전공 · 사범학부 유아교육과	
6	- 특수학교(초등)정교사(2급) - 특수학교(중등)정교사(2급) 국어/영어	· 사범학부 특수교육과	
7	특수학교(유치원)정교사(2급)	· 사범학부 유아특수교육과	
8	특수학교(중등)정교사(2급)체육	· 사범학부 특수체육교육과	

5. 교원자격증 수령 방법: 2024.8.14.(수) 이후 해당 학부사무실에서 수령(변동사항 발생 시 추후 공지)

[첨부] 교사자격취득결격사유관련법률시행 안내(교사자격취득용 검사결과 통보서(예시 양식) 포함) 1부.

2024. 4. 16

사범학부장

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안내

□ 안내 배경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「교사자격」 취득 결격사유* 신설 개정 법률 공포(2012.22.) 및 시행(21.6.23. 이후 교사자격검정신청자부터 적용)
- * 정교사(1·2급), 전문상담 보건·영양 사서교사(1·2급), 실기교사, 준교사(재발급, 부전공 제외)
- ** 성범죄자,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

[「유아교육법」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「교사자격취득결격사유 조항 신설 이유」]	
▶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 취득을 더욱 엄격히 하려는 것임	
▶ 아울러 성범죄, 마약류 중독 등의 교직사회 유임을 예방하고, 타직종 대비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수용	
(현재 의사, 간호사, 수의사, 영양사 면허 취득 시 결격사유 적용 중)	

- 교사자격취득 예정자는 결격사유 확인 업무를 원활히 진행 할 수 있도록 검사 및 그 결과지를 학부사무실에 무시험검정신청서와 함께 기한 내에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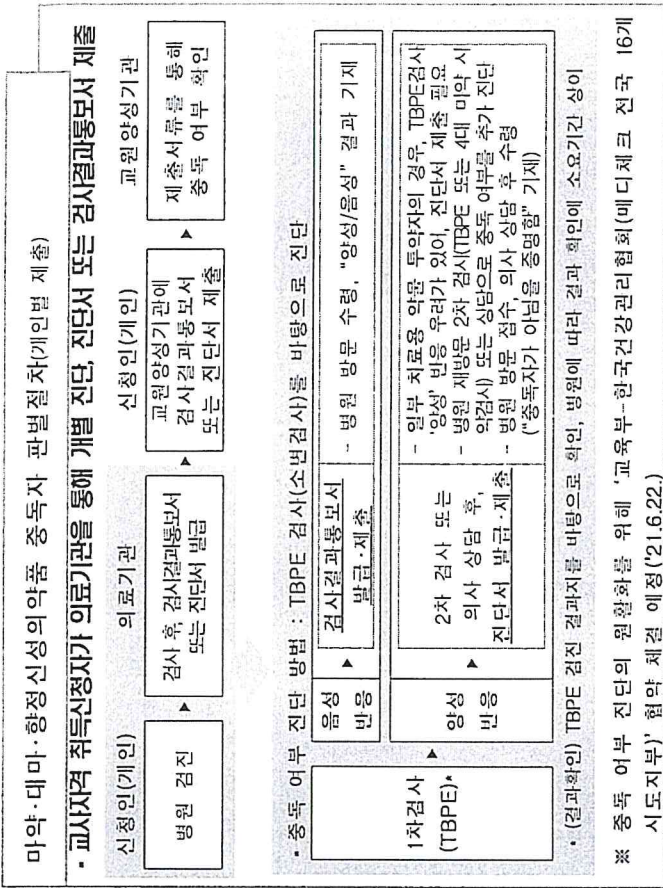
□ 결격사유 종류

- 성범죄 경력 조회
-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판별

□ 성범죄 경력 조회 방법

- 교원자격부시험검정신청서 제출 시 성범죄 조회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는 학교에서 일괄 조회
- 교원자격부시험검정신청서 제출 시 성범죄 조회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 미동의자는 본인이 관할주소의 경찰서에 조회 신청 후 그 결과를 사법학부로 제출

□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



□ 제출서류 및 검진 관련 안내

- (제출서류)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
- ※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'양성'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'의사의 진단서'를 제출하도록 사전 안내 필요
- ※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,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, '마약류 중독자가 아님'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, 준용 가능
- (서류 유효기간)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 까지 검진·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
- ※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(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 건강검진 시 포함 가능, 기타 기관 문의 필요)
- ※ (예시) 특수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인 '23년 8월 졸업예정자'의 경우, '22년 1월~23년 8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검진·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 가능
- (검진방법) 소변검사로 실시(혈액, X-ray 검사 방식도 가능)
- ※ (TBPE검사)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검사(일부 마약류 외 약물도 양성반응 가능) (4대 마약 시약검사) 각 마약류 사용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(검사 신뢰도 상승)

○ (검진비용) 의료기관별 상이하나, TBPE검사의 경우 '검사결과통보서'는 약 5,000원 ~ 25,000원, '진단서' 포함 시 약 15,000 ~ 35,000원 예상

※ 2차 검사로 실시 가능한 '4대 미약시약검사'는 TBPE 검사 비용보다 많은 비용 소요

○ (검진기관) 보건소는 판별검사가 불가, 건강검진센터, 정신건강의학과, 가정의학과, 내과 등에서 검사 후, 진단서 등 발급 가능(사전예약 필요)

- (법무부 지정기관)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*에서 마약검사 가능여부 사전문의 후, 검사 가능

* www.hikorea.go.kr 탑재된 취업비자 입국 외국인 대상 마약류 검진기관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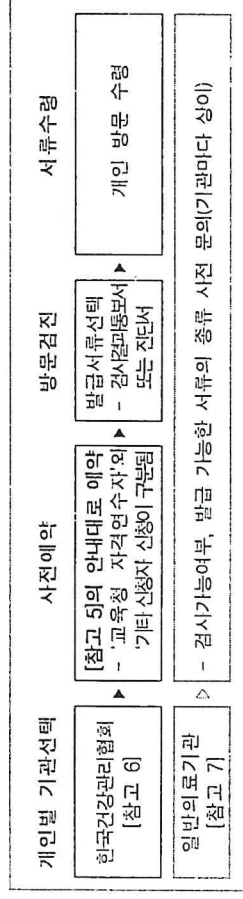
※ 검사결과통보서(=마약검사결과지 등) 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,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

- (한국건강관리협회) '21.6.23. 이후 전국 16개 지부에서 검사 가능' ('21.6.22. 교육부와 협약 체결 예정)

※ 검사결과통보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지부에서 발급 가능

2 [참고] 한국건강관리협회(교육부 협약기관) 검진안내

○ (검진신청) 교사자격 취득을 신청하려는 사람에 한해 '21.6.23. 이후 마약류 검사 가능'



※ (검사결과통보서) 민감정보가 포함된 내용으로, 개인별 의료기관 방문 수령 필요

○ (검진내용 및 비용) 소변검사를 통한 TBPE검사 후, 서류* 발급

* (TBPE검사+검사결과통보서) 국가건강검진 병행시 5,000원 / 비병행시 6,000원
→ (+진단서) 10,000원 추가

□ 자료 보관

○ 교원자격증 발급심사서류는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에 의해 '중영구' 보관 필요

※ 원본 문서 또는 원본 문서를 전자 파일화(스캔본)한 문서를 보관 가능

참고 1

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통보서[예시]

검수번호					
교사자격취득용 검사결과통보서					
구분	시험시행기관	접수번호			성명
검사시행			(번호)		
주민번호					
주소		전화번호	성) _____	성) _____	
			휴대폰) _____		

검시내역	
TBPE검사	기준범위

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.

2021년 00월 00일

담당자: (인)

의사소견	
종합판정	
판정보류소견	
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. 2021년 00월 00일	
검사기관 (인)	
사용제한	교원양성기관 교사자격취득 결정사유 확인용도 외 사용(전용)금지

※ 결과통보서는 기관마다 발급가능여부가 상이하므로, 사전 확인이 필요(교육부 협약 체결에 따라 전국 '건강관리협회-메디체크'에서 발급 가능, 절차는 [참고 5] 참조)

참고 2

한국건강관리협회(메디체크) 결격사유 검진 방법

☐ 교사자격취득자의 예약명

수검자 소속	예약명	비고
일반대 교육과	교사자격취득용 검사-대학 (대학명이 아님, '대학으로 예약')	

※ (유의사항) 교육청 연수대상자가 아닌 모든 유형은 '교사자격취득용 검사-대학'이라는 예약명으로 예약신청을 해야 함

참고 3

한국건강관리협회(메디체크) 전국 지부 현황

연번	지부명	주 소	연락처
1	서울 서부	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35 (화곡6동 1097)	02-2600-2000
2	서울 동부	서울시 동대문구 양신로 78 (용두동 112-1)	02-3290-9800
3	서울 강남	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(신천동 7-10) 롯데캐슬프리자 5층	02-2140-6000
4	부산	부산시 동래구 송림대로 145 (운천2동 1438-2)	051-553-6400~4
5	대구	대구시 동구 정동로 16 (신천동)	053-757-0500
6	인천	인천시 미추홀구 독매로 500 (송의동 163-22)	032-890-8700
7	울산	울산시 중구 범행로 360 (학산동 75-5)	052-241-2000
8	경기	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57(조원동 779)	031-250-5800
9	강원	춘천시 남촌로 50 (효지2동 383-7)	033-260-0800
10	충북·세종	황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3(보명동 725)	043-297-1100
11	대전·충남	대전시 서구 계항로 611 (탄방동 90-8)	042-532-9890
12	전북	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40 (덕진동1가 1408-3)	063-259-8900
13	광주·전남	광주시 서구 대남대로 432 (농성동 638-11)	062-363-4040
14	경북·대구	대구시 북구 관달로 23(노원동3가 523-3)	053-350-9000
15	경남	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107 (양덕2동 524-2)	055-259-0100
16	제주	제주시 연북로 111 (연동 1375)	064-740-0200

※ 한국건강관리협회(메디체크) 홈페이지 : <http://www.kahp.or.kr>